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1995. 12. 23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5년 12월 9일

○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9일

다. 상 정 일 자 : 1995년 12월 18일

○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('95.12.18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국장 장 상 자)

기금관리담당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

3. 주 요 골 자

ㅇ 기금의 예탁을 "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"는 규정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"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"로 개정

ㅇ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"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"을 지방재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"기관운영관과 기금출납원"으로 개정

4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충청북도 청소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

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
청소년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지원사업운영
관리조례 제4조2항중 기금의 예탁을 "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"는
규정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"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"로 개정하려는
것이며

동 조례 제4조 4항중
기금의 운영관리를 "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"을 "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
공무원"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(기금의 운영관리)1항이 개정
됨에 따라
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 : 없 음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요지 : 없 음

9. 개 정 조 례 안 : 별 첨

10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